대한한의학회지 논문투고규정

2000년 6월 24일 제정
2000년 7월 4일 개정
2004년 4월 8일 개정
2008년 9월 29일 개정
2009년 4월 30일 개정
2011년 9월 1일 개정
2014년 1월 15일 개정
2014년 6월 11일 개정
2015년 1월 15일 개정
2019년 3월 19일 개정
2019년 4월 10일 개정
2020년 10월 15일 개정
2020년 10월 15일 개정
2020년 10월 15일 개정
2021년 5월 12일 개정
2021년 7월 28일 개정

1. 일반 사항

본지의 투고규정은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에서 마련한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양식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을 근간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다음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 양식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른다.

1-1. 원고의 범위와 종류

본지는 open-access로, 연4회 발간되는 상호심사 저널이다. 본지에는 한의학 및 관련 과학 분야의 우수한 논문을 게재한다. 논문의 종류는 원저, 종설, 임상 및 증례보고, 단신보고 등으로 한다.

1-2. 투고자격

투고자의 자격은 본회의 회원이거나 한의학 및 관련 학문 연구자로 한다.

1-3. 원고게재여부 및 게재순서

모든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복수의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받은 후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채택된 원고의 게재순서는 최종 원고의 접수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 중복게재 및 무단게재

이미 다른 학술지 및 기타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같은 언어로 된 같은 내용의 원고는 투고할 수 없으며, 본지에 게재 된 원고를 임의로 타지에 전재할 수 없다.

1-5. 심사료 및 게재료

논문이 게재될 경우 저자는 게재룔 편당 200,000원을 부담한다.

1-6. 환자의 인권보호

증례기술의 경우 환자의 비밀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성명, 병록번호, 정확한 날짜의 기술은 피해야 하고 환자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1-7. 연구 윤리

인간대상연구는 헬싱키선언(http://www.wma.net/policies-post/wma-declaration-of-helsinki-ethical-princeples-for-medical-research-involving-human-subjects)의 윤리기준을 준수하여 독립된 임상연구윤리위원회(Institute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물실험연구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해당 기관의 윤리규정 또는 NIH guide for the car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를 준수하였음을 명시해야 한다.)

1-8. 편집위원회의 역할

원고 송부 및 편집에 관한 제반 문의는 편집위원회에 하며,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체재, 분량 등에 대하여 저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 중 필요한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와 체제 등을 수정할 수 있다. 모든 원고는 제출 후에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9. 저작권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대한한의학회가 소유한다.

2. 학술지 발간 및 원고 접수

본지는 연 4회(3월 1일, 6월 1일, 9월 1일, 12월 1일) 발간하며,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원고의 접수일은 원고가 편집위원회에 접수된 날짜로 하며, 원고의 채택은 심사 후 수정이 완료된 날짜로 한다.

3. 원고 투고 요령

투고는 본회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submit.jkom.org)을 이용한다.

4. 논문(원저) 양식

논문의 순서는 표제지(title page), 초록(abstract)과 주제어(중심 단어, key words), 본문(texts), 감사의 말씀 (acknowledgements), 참고문헌(references), 표·그림(table & figure), 그림 설명(legends)의 순으로 하며(임상 및 증례보고, 종설은 예외) 본문은 제목, 서론, 재료(대상) 및 방법, 결과, 고찰, 결론(요약) 항목으로 나눈다.

4-1. 원문형식

MS word로 작성하며 글자는 Times Roman 10point로 하며 중요 강조는 이탤릭체를 사용한다.

4-2. 표제지

표제지에는 1) 간결하며, 내용을 잘 전달하는 국문 및 영문제목(전치사, 관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 2) 국문과 full name 영문의 저자 이름, 소속기관, 3) 연구비 지원 등의 후원자, 4) 교신저자의 이름과 주소 등(전화, Fax, E-mail 주소 포함)을 적으며, 국문제목이 30자가 넘거나 영문제목이 15단어가 넘을 때는 표지에 따로 단축제목(running head)을 표제지 페이지 끝에 적어 넣는다(국문의 경우 10자 이내, 영문의 경우 5단어 이내).

4-3. 저자

논문저자로 원고에 나열한 사람은 저자로서 자격이 있어야 한다. 각 저자는 연구 내용에 대하여 公的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연구에 충분히 참여한 사람이어야 한다. 저자 자격은 1) 연구의 기본 개념 설정과 연구의 설계, 자료의 분석과 해석에 공헌, 2) 초고를 작성하거나 지적 내용의 중요 부분을 변경 또는 개선하는데 상당한 공헌, 3) 최종원고의 내용에 동의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있다. 저자는 ①제1저자 ②교신저자 ③공동저자로 구분하고, 논문에 표기하는 순서는 제1저자, 공동저자 순으로 하되 교신저자는 하단에 별도로 표기한다. 자 각자가 연구에서 무슨 일을 맡았었는지를 편집인이 질문할 수도 있다.

4-4. 초록

원고에는 영문초록을 사용한다. 초록에는 영문으로 제목, 저자명(이름-성의 순서로), 소속기관명, 초록내용을 기재하며 내용의 길이는 영문초록의 경우 250단어 이내로 한다. 초록은 소항목으로 구분하여 목적(Objectives), 방법(Methods), 결과(Results) 그리고 결론(Conclusions)의 형태로 기록하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목적(Objectives) : 왜 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1-2문장으로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기술한다. 여기에 기록된 목적은 원고의 제목, 그리고 서론에 개진되는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② 방법(Methods) : 첫 문단에 기술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어떤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였고, 치우침(bias)을 어떻게

조정하였는가를 기술한다.

③ 결과(Results) : 전 문단에 기술된 방법으로 관찰 및 분석한 결과가 어떠하였다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한다.

④ 결론(Conclusions) :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도달된 결론을 1-2문장으로 기술하며, 이는 첫 문단에 기술된 연구의 목적에 부합된 것이어야 한다.

초록 아래에 논문의 주제어(중심단어, key words)를 6개 단어 이내로 표기한다. 이때 주제어는 인덱스 메디커스(Index Medicus)에 나열된 의학주제용어(MeSH:Medical Subject Heading)를 사용해야 하며, 한의학 전문용어 혹은 한약처방명이거나 경혈명일 때는 WHO에서 발간한 WHO 전통의학 국제표준용어(WHO-IST)집과 WHO 침구 경혈 부위 국제 표준서를 참고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 WHO 전통의학 국제 표준용어(WHO-IST)
http://www.wpro.who.int/publications/who_istrm_file.pdf

4-5. 본문

본문에서는 서론, 대상 또는 재료와 방법, 결과, 고찰, 결론, 참고문헌의 순서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각 항목을 통합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임상 및 증례보고, 종설은 다른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이에 대한 간략한 배경이 언급되어야 한다. 방법은 실험동물 등 대상, 방법, 실험기구(제작사 및 기종 명시), 절차 등을 포함하되, 다른 연구자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경우 재현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도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하고 결과의 통계적 검정 방법도 기재하여야 한다. 대상군과 대조군에 대한 채택 기준과 제외 기준을 명확하게 기술한다. 연구대상이 사람인 경우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문화적 성(gender) 중 적절한 표기를 선택해서 사용해야 하며,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문화적 성(gender)을 결정한 방법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단, 동물이나 세포의 경우 생물학적 성(sex)으로 명시해야 한다. 만약 연구자가 하나의 성(sex 또는 gender)이나 특정 집단(인종 또는 민족)만을 연구대상으로 한 경우, 타당한 근거 또는 연구의 제한점을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결과는 도표의 순서와 같은 순으로 기재하되 본문의 표나 도해의 데이터를 반복하여 적어서는 안되며, 중요한 관찰 결과만을 강조하고 요약한다. 고찰은 연구의 새롭고 중요한 측면과 그로부터 나온 결론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결과와 무관한 문헌고찰은 피한다.

① 용어 : 학술용어는 될 수 있는대로 국문으로 써야 하고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만 영문 또는 한문으로 쓸 수 있다.

② 약자 : 약어는 표준약어만 사용한다. 논문제목과 초록에는 약어 사용을 피한다. 본문에 약어를 처음 사용할 때에 는 정식 명칭을 먼저 쓰고 괄호 등을 이용하여 약어를 표기하며 이후에는 약어만으로 표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약자는 가급적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으나 표준 측정단위의 약어는 예외이다.

③ 고유명사, 숫자 및 측정치의 표기 : 인명, 지명, 그 밖의 고유명사는 가급적 원어를,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도량형은 미터법을 사용한다. 온도는 섭씨로, 혈압은 mmHg로 기록한다. 혈액학적 또는 임상화학적 측정치는 국제단위 체계(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SI)방식의 미터법을 사용한다. 측정수치와 단위 표시는 띄어쓴다.

④ 약품명 : 상품명보다는 일반명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품명의 표기가 결과의 평가나 추적연구에 중요할 경우에 한해서 표기가 가능하다.

a. 한약처방명은 한국어 발음을 우선으로 표기하며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한다. 그리고 湯, 散, 丸같은 劑型을 뜻하는 단어는 hypen(-)을 사용한 뒤 소문자로 표시한다.
(예) Chungpesagan-tang

b. 한약명은 생약명으로만 표기해서는 않되고 사용되는 실제 부위 또는 수치법을 적절한 영어로 표기하여야 한다.
(예) 감초(炙) : Broiled root of Glycyrrhiza uralensis FISCH

⑤ 항목구분

본문의 항목구분은 아라비아 숫자로 구분한다.
예 : 1, 2, 3, 1), 2), 3), (1), (2), (3)

4-6. 그림·표

그림(Figure)·표(Table)의 제목은 영문으로 표기하며, 표 안의 내용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Table 제목은 전치사, 관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의 첫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표는 수평선이나 수직선을 넣지 않고 작성한다. 본문에 인용한 순서대로 표에 번호와 간단한 제목을 붙이며 제목은 원칙적으로 약자를 사용할 수 없다. 항목에 대한 설명은 각주에 넣고 표제에는 넣지 않는다. 표에 사용한 비표준약어는 모두 각주에서 설명한다. 각주에는 기호를 써서 설명하며 기호는 다음 순서로 사용한다 : *, †, ‡, §, ‖, ¶, **, ††, ‡‡. Table 및 Figure는 본문 뒤에 순서대로 일괄적으로 첨부하며, 본문 중에 그 위치를 표시한다.

그림(Figure)설명은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첫 단어의 첫 자만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한다. 그림은 전문 도안으로 선명하게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후면에 위를 가리키는 화살표와 저자명,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모든 그림의 제목, 설명 등은 별도 면에 한꺼번에 기재한다.

표나 그림(사진 포함)은 모두 합하여 10개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초과되는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저자가 컬러그림을 요구할 경우에는 저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4-7. 참고문헌

저자들은 원고에 포함된 참고문헌이 정확하고 완전하게 인용되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모든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참고문헌의 영문 작성은 WHO에서 발간한 WHO 전통의학 국제 표준용어(WHO-IST)집과 WHO 침구 경혈 부위 국제 표준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 WHO 전통의학 국제 표준용어(WHO-IST)
http://www.wpro.who.int/publications/who_istrm_file.pdf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인용한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매겨 정리하고, 본문에는 인용문구의 끝에 어깨번호 형태의 아라비아 숫자로 반괄호 안에 넣어 표시하되 말미의 참고문헌 일련번호와 일치하게 하여 기재한다. 초록은 참고문헌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초록, 미발간 연구보고, 인터넷, 신문을 인용하는 것은 가급적 피한다. 게재가 결정되었으나 아직 출판되지 않은 논문은 끝에 “in press”를 표기한다. 영문성명은 last name을 앞으로 내고 기타는 initial만 표시한다. 그리고 참고문헌의 수는 원저는 40개 이하, 증례보고는 20개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단, 종설 논문은 예외로 한다.) 전체 인용논문 중에 대한한의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2편 이상 인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1) 학술지 논문 : [저자의 성],[첫번째 이니셜].[중간 이니셜].([년도]). [논문제목]. [저널명], [권](호), [논문의 페이지 범위]. [DOI]
6인 이내 저자의 경우 성을 앞에 쓰고 그 외는 머리글자를 쓰며, 7인 이상 저자의 경우, 차례대로 6인을 쓴 후 et al. 로 표기한다. 다음으로 저자명, 발간 연도, 논문 제목, 학술지 이름, 권(호), 해당 논문의 첫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 DOI를 기재한다.

(예1) Grady, J. S., Her, M., Moreno, G., Perez, C., & Yelinek, J. (2019). Emotions in storybooks: A comparison of storybooks that represent ethnic and racial groups in the United States. Psychology of Popular Media Culture, 8(3), 207-217. https://doi.org/10.1037/ppm0000185

2) 단행본 : [저자의 성], [첫 번째 이니셜]. [중간 이니셜]. ([년도]). [책 제목: 부제목의 첫 번째 단어를 대문자로 씀]. [도시, 주 약자/(미국 이외의 나라일 경우)국가]: [출판사]. [DOI]
국문 단행본의 경우에도 영문으로 서지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괄호를 이용하여 서지정보를 병기할 수 있다. 다만 영문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예1) Jackson, L. M. (2019). The psychology of prejudice: From attitudes to social action (2nd ed.).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s://doi.org/10.1037/0000168-000

3) 단행본 속의 chapter : [저자의 성], [첫 번째 이니셜]. [중간 이니셜]. [chapter명: 단행본 편집자명]. [단행본명]. [판수]. [발행지: 출판사명]. [출판년도:시작면-종료면].

(예) Foster DW. Diabetes mellitus. In: Fauci AS, Braunwald E, Isselbacher KJ, Wilson JD, Martin JB, Kasper DL, Hauser SL, Longo DL, eds. Harrison's textbook of medicine. 14th ed. NewYork: McGraw-Hill. 1998:2060-81.

4) 전자매체 자료

(예) Morse SS. Factors in the emergence of infectious diseases. Emerg Infect Dis [serial online] 1995 Jan-Mar[cited 1996 Jun 5]; 1(1):[24 screens]. Available from: URL:http://www.cdc.gov/ncidod/EID/eid.htm

※ 저자가 2명일 경우 "&" 사용

※ 저자가 3-6명일 경우 쉼표로 저자 이름을 구별, 마지막 저자 이름 앞에 "&" 사용

5. 원저 이외의 원고

일반적 사항은 원저(Original Article)에 준한다.

5-1. 종설(Reviews Article/Editorial Article)

종설은 특정 제목에 초점을 맞춘 고찰로서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여 게재한다.

5-2. 증례보고(Case-report)

① 전체분량은 Micro word 3,000 characters로 작성한다.

② 논문의 순서는 ㄱ. 제목, 저자(소속, 성명); ㄴ. 영문 초록 및 중심단어(2내지 5개); ㄷ. 서론; ㄹ. 증례; ㅁ. 고찰; ㅂ. 요약; ㅅ. 감사의 글; ㅇ. 참고문헌; ㅈ. 표; ㅊ. 그림으로 한다.

③ 영문 초록 및 요약은 항목 구분없이 150단어 이내로 한다.

④ 고찰은 증례가 강조하고 있는 특정부분에 초점을 맞추며 장황한 문헌고찰은 피한다.

⑤ 참고문헌의 수는 20개 이내로 한다.

5-3. 독자편지

6개월 이내에 학회지에 출판된 특정 논문에 대한 건설적인 비평 또는 의견을 기술하며 원고는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하며 참고문헌은 5개 이내로 제한한다.

부 칙(2014.1.15.)

1. 본 규정는 이사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6.11.)

1. 본 규정는 이사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 15.)

1. 본 규정는 이사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4. 10.)

1. 본 규정는 이사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0. 15.)

1. 본 규정는 이사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5. 12.)

1. 본 규정는 이사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7. 28.)

1. 본 규정는 이사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저자 점검표

2000년 6월 1일 제정
2006년 3월 10일 개정
2008년 9월 24일 개정
2009년 4월 30일 개정
2020년 10월 15일 개정
2021년 5월 12일 개정
2021년 7월 28일 개정

논문제목 : _____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총 괄	한글이나 영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였다.		
	원고는 Microsoft Word로 작성하였다.		
	원고는 표제지, 영문초록과 Key Words, 본문, 감사의 말씀, 참고문헌, 표·그림 및 그림의 설명문 순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면을 바꿔서 작성하였다.		
	약자는 최소한으로 사용하였다. 제목에는 약자를 쓰지 않았고, 본문에서는 처음 나올 때에 괄호 속에 약자를 표기하였고, 표와 그림 설명문의 약자는 이들의 하단에 설명하였다.		
	표지 이외에는 저자의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지 않았다.		
	약물명이나 방제명은 이탤릭체로 하였다(영문만).		
표 지	표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였다 : 국문 및 영문 논문 제목, 국문 및 영문 저자명, 저자 소속 기관명, 교신저자의 연락처(주소, 전화 및 Fax 번호, E-mail address)		
	표지 다음의 제 2페이지로서 국문 및 영문 제목만 있는 표지(논문제목만 있는 표지로서 심사과정에 필요한 것임)를 작성하였다.		
영문초록	원저의 영문 초록양식은 Objectives, Methods, Results, Conclusions, Key Words의 제목 및 순서로 단락을 나누어 작성하였다.		
	초록은 원저의 경우 250단어 이내, 증례 및 단신보고의 경우 150단어 이내로 작성하였다.		
	3개 이상 6개 이하의 Key Words를 첨부하였다.		
	영문 초록을 원어민 혹은 전문가의 검토, 교정, 감수 등을 받았다.		
참고문헌	모든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모든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되었고,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된 순서로 어깨번호로 표시하였다.		
	잡지명은 Index Medicus의 약어로 표기하였다.		
	모든 참고문헌은 40개 이내로 하였고 참고문헌은 표기방법과 구두점 등이 투고규정과 맞는지 확인하였다.		
	참고문헌중 영문 저자 표기 방법은 성을 먼저 쓰고 다음에 이름의 Initial만 적었다.		
형 식	● 학술지 논문 : [저자의 성],[첫번째 이니셜].[중간 이니셜].([년도]). [논문제목]. [저널명], [권](호), [논문의 페이지 범위]. [DOI] ex) Grady, J. S., Her, M., Moreno, G., Perez, C., & Yelinek, J. (2019). Emotions in storybooks: A comparison of storybooks that represent ethnic and racial groups in the United States. Psychology of Popular Media Culture, 8(3), 207-217. https://doi.org/10.1037/ppm0000185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형 식	● 단행본 : [저자의 성], [첫 번째 이니셜]. [중간 이니셜]. ([년도]). [책 제목: 부제목의 첫 번째 단어를 대문자로 씀]. [도시, 주 약자/(미국 이외의 나라일 경우)국가]: [출판사]. [DOI] ex) Jackson, L. M. (2019). The psychology of prejudice: From attitudes to social action (2nd ed.).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s://doi.org/10.1037/0000168-000 ※ 저자가 2명일 경우 “&” 사용 ※ 저자가 3-6명일 경우 쉼표로 저자 이름을 구별, 마지막 저자 이름 앞에 “&” 사용		
Table	표는 각 표마다 면을 바꿔서 작성하였으며, 표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작성하였다.		
	표의 제목은 간결하고 설명적이다.		
	표에 사용된 약어는 하단에 따로 설명하였다.		
	표는 그 자체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본문이나 그림의 자료를 중복 나열하지 않았다.		
	표의 숫자가 정확한지 재차 점검하였고, 본문과 같은지 확인하였다.		
	제목은 전치사, 관사를 제외하고 각 단어의 첫 철자는 대문자로 하였다.		
Figure	그림이나 사진을 인쇄과정에서 축소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크고 명료하게 작성하였다(필요시 원본제출).		
Legends	그림 설명문은 영어로 작성하였으며 첫 단어의 첫 자만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하였고 문장은 마침표로 종결하였다.		
	그림 설명문은 단순히 제목만 쓰지 않았고, 그림을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 이 논문(원저, 증례보고, 단신보고, 종설)을 게재 신청합니다.

저자들은 이상의 점검을 모두 마쳤으며 이 점검표를 원고와 함께 보냅니다.

본 논문이 대한한의학회지에 출간될 경우 그 저작권을 대한한의학회지에 이전합니다. 저자는 저작권이외의 모든 권한 즉, 특허신청이나 향후 논문을 작성하는데 있어 본 논문의 일부 혹은 전부를 사용하는 등의 권한을 소유합니다.

저자들은 모두 이 논문의 작성에 구체적이고 중요한 기여를 하였으며 원고 내용에 공적인 책임을 집니다.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본 논문이 심사되지 않고 곧바로 반환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논문은 이전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의 모든 내용과 대한한의학회의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음을 서약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20 년 월 일

저자의 성명 및 서명 :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대한한의학회 연구윤리규정

2013년 12월 11일 제정
2014년 1월 15일 개정
2017년 12월 7일 개정
2021년 5월 12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한의학회(이하 본회라 함) 회칙 4조에 명시된 학술활동에 있어서 연구윤리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본회 회원과 학회의 학술지인 대한한의학회지(이하 학회지라 함) 발간에 관여하는 사람(투고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회를 통해 투고, 발표되는 모든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연구윤리규정 준수서약서 제출)

본회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저자는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서명한 '연구윤리규정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은 별도의 양식에 따른다.

제 2 장 저자윤리

제5조(저자의 자격)

저자는 논문의 구상 및 설계, 자료 수집, 자료의 정보화 그리고 논문 작성에 관여하여야 하며, 논문 작성 중 주요 사항의 수정에 기여한 자도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저자가 될 수 있다. 제1 저자는 연구를 주도해서 해당 논문의 핵심 자료를 최대한 생산하고 정보화시켜 논문의 초안을 작성한 사람으로 한다. 교신저자는 논문의 최종본을 승인한 자로 논문에 대해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독자와 교신의 의무를 지닌 사람으로 한다. 공동 저자는 논문에서 제1 저자와 교신저자를 제외한 나머지 저자로 한다. 단, 단순히 자료 혹은 연구비만을 제공하거나 연구그룹에서 단순한 기술을 지도한 자는 저자가 될 수 없다.

제6조(자격의 균형성)

저자는 연구의 책임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격의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한다.

제7조(관련법규 준수)

저자는 연구와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특허나 저작권 같은 지적 재산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8조(연구의 진실성)

저자는 모든 연구와 학술 행위를 정직하고 정확하게 수행해야 한다. 위조, 변조, 표절 등의 연구부정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9조(업적과 책임)

저자는 학술연구자로서 자신이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업적을 인정받고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제10조(오류교정의 의무)

저자는 투고 후 자신의 논문에 중대한 오류를 발견했으면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여 신속하게 오류를 수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연구노트 보존)

저자는 연구노트 관리지침을 숙지해서 연구과정과 결과 등을 실험일지나 연구노트에 성실히 기록하고 학회지 출간 이후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제 3장 심사위원윤리

제12조(저자의 인격존중)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 저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저자의 지적 산물인 투고된 논문도 이에 준해서 심사해야 한다.

제13조(심사규정준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관련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14조(심사의 객관성)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을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배제하고 학자적 양심과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심사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려우면 지체없이 이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5조(중복심사금지)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인 경우는 편집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6조(심사비밀엄수)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저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와 논문내용을 공개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학술지에 출판되기 전에 심사논문의 내용이 타 연구에 인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 4 장 편집위원윤리

제17조(권한)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의 게재여부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을 지닌다.

제18조(편집규정준수)

편집위원은 본회의 '대한한의학회지 게재논문 편집·심사규정'에서 정한 편집관련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편집과 관련해서 회원들 사이에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9조(편집비밀엄수)

편집과 관련해서 알게 된 논문저자의 정보 및 논문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위반확인 및 보고의무)

편집위원회에 부여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해당 논문에 대해 연구윤리 문제가 제기되면 편집이사는 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그 사실이 판명될 때까지 해당논문의 게재를 유보시키며, 해당논문의 윤리위반내용을 서면으로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장 연구윤리위원회

제21조(목적)

이 규정은 본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2조(권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연구윤리강령의 제정 및 개정
2. 연구윤리위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3. 기타 학회 내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심의

제23조(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한다. 단, 학술이사와 편집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학회장이 위촉한다.
4.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그 외 사항은 본회 정관에 따른다.

5. 위원회의 간사는 편집이사로 한다.

제24조(의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위원회는 논의된 사항(제보자, 피조사자, 조사위원, 참고인, 자문에 관여된 사람의 신원을 포함)에 관한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윤리위반 여부를 다음 학술지 발간이 전까지 심의해서 완료해야 한다.
3. 위원회는 회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보관하고 심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5조(회의운영)

위원회의 소집과 의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된다.
2.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의 찬반은 위원장이 이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를 둘 수 있다.
3.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효력을 발생한다.

제26조(심의)

연구윤리의 심의를 위하여 학회 내 관련부서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심의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6 장 위반처리

제27조(위반제보)

본회회원, 본 학회지 발간에 관여하는 사람 및 일반연구자는 본회회원이나 본 학회지 발간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연구윤리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본회의 연구윤리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부정행위 제보신청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제보자와 피조사자 신원 비밀보호)

연구윤리사안에 관련된 모든 사람은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신분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단, 제보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면 제보자는 비밀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29조(통고의 의무)

학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연구윤리위반에 관한 사안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30조(피조사자의 의무)

연구윤리 규정위반으로 보고된 회원 혹은 본 학회지 발간에 관여하는 사람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제31조(위반검증요령)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2015.11.3. 개정]'의 내용 안에서 자율적으로 검증절차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32조(소명기회의 동등성 보장)

연구윤리 규정위반을 제보한 사람과 보고된 피조사자는 동등하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갖는다.

제33조(윤리위원 기피신청)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위원회 특정위원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그 사유를 밝혀 해당윤리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기피신청의 타당성 여부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른다.

제34조(재조사 신청)

제보자나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 서면으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35(명예회복조치)

본회는 연구윤리 규정위반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6조(징계효력발생)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는 이사회의 의결과 공표를 통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7 장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제37조(부정행위)

다음의 행위는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된다.

1. 대행
   저자의 연구활동이 실질적이지 않고 논문의 자료수집과 정보처리가 타인에 의해 관리 되거나 또는 논문이 타인에 의해 집필 작성되는 것이다.
2. 표절
   이미 발표된 타인의 주장, 아이디어, 연구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출처 표시없이 자신의 논문이나 서적에 그대로 사용하여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단, 타인의 연구결과가 이미 교과서, 공공기관의 문서나 서적 등에 공개되어 일반적인 지식으로 통용되면 인용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3.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결과를 허위로 만드는 것이다.
4. 변조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또는 삭제함으로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시키는 것이다.
5. 자기표절
   하나의 논문내용을 2편 이상 여러 개로 분리하여 발표하거나, 이미 출판한 논문에 다른 자료를 추가해서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한 결론의 다른 논문을 만드는 것이다.
6. 이중투고 및 이중출판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논문을 포함)을 객관적 구분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재차 표현하거나 재구성해서 새로운 논문으로 투고하거나 또는 전문서적으로 출판하는 것이다. 단, 독자층이 다르거나 학술대회 및 세미나에서의 working paper나 요약본은 이차게재로 인정하여 윤리규정 위반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7. 부당한 저자표기
   논문이나 저서 등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반대로 학술적 기여가 없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8. 부적절한 인용 및 참고문헌 표시
   여섯 단어 이상이 연쇄되는 문장을 인용할 때는 각주를 통해 인용사실을 명시해야 한다(단, 실험방법은 예외로 한다). 타인의 연구물에 사용된 참고문헌을 자기 연구물의 인용처로 사용하여 본인이 원전을 직접 찾은 것처럼 위계해서도 아니된다.
9. 연구노트훼손
   연구노트를 의도적으로 파손하거나 노트 내 데이터를 변조 또는 삭제하는 것이다.
10. 업무방해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다.
11. 부당한 연구비 집행
    저자가 수혜 받은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여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 부당사용의 지적을 받은 경우이다.

제 8 장 위반징계조치

제38조 (징계 종류)

연구윤리 위반정도에 따라 아래의 징계가 처해진다.

1. 윤리준수에 대한 경고조치
2. 논문게재거부(사전에 확인된 경우)
3. 본 학회지에서 해당논문삭제
4. 모든 저자들의 1년에서 3년 동안 학회지 투고 금지
5. 저자가 소속된 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윤리 위반 사항 통보
6. 회원자격정지

제 9 장 조항제정

제39조 (규정 신설 및 개정)
규정조항의 신설 및 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으면 그 규정은 즉각 효력을 발생한다.

제40조(기타)
규정에 명기되지 않는 모든 사항은 일반관례 및 연구윤리위원회 심의와 결정에 따른다.

부 칙 (2013.12.1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15.)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7.)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5.12.)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7조관련 서식>

연구부정행위 제보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제보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 변조 :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 기타 부정행위
     -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 기타 연구와 관련하여 당해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
2. 제보시 *표시된 부분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보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며, 실명이 아닌 경우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제보자의 신원은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제보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5. 고의로 허위제보를 하는 경우 제보자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며 별도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제보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E - m a i l*	

2. 피제보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기 타 사 항	

3. 제보내역

제 목*	
사 유*	
내 용*	
조치희망사항	
증 빙 자 료	

상기 피제보자를 연구부정행위자로 제보합니다.

년 월 일

제 보 자 :

대한한의학회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대한한의학회 The Society of Korean Medicine

■ 회장 (President)

최도영	Do-Young Choi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choi4532@unitel.co.kr

■ 부회장 (Vice-President)

이재동	Jae-Dong Lee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ljdacu@naver.com
이의주	Eui-joo Lee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drsasang@daum.net
임형호	Hyung-Ho Lim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omdlimhh@naver.com
고성규	Sung-Kyu Ko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epiko@khu.ac.kr
이은용	Eun-Yong Lee	세명대학교 충주한방병원	acupley@naver.com

■ 이사 (Council Members)

기획·총무/국제교류이사	남동우	Dong-Woo Nam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hanisanam@hanmail.net
학술이사	김규석	Seong-Woo Yoon	강동경희대학교병원	kuseok@hanmail.net
교육이사	최성열	Sung-Youl Choi	가천대학교 길한방병원	pc1075@hanmail.net
제도이사	김재은	Jai-Eun Kim	동국대학교 바이오메디캠퍼스 한의학관	herbqueen@dongguk.ac.kr
보험이사	서병관	Byung-Kwan Seo	강동경희대학교 한방병원	seohbk@hanmail.net
고시이사	이현종	Hyun-Jong Lee	대구한의대학교 대구한방병원	whiteyyou@hanmail.net
편집이사	문상관	Sang-Kwan Moon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skmoon@khu.ac.kr
국제교류이사	채윤병	Yoon-Byung Chae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ybchae@khu.ac.kr
정보통신이사	안준석	Jun Seok Ahn	안준석한의원	tungu@hanmail.net
홍보이사	이승훈	Seung-Hoon Lee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aimforyou@hanmail.net
정책이사	한창호	Chang-Ho Han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changho.han@gmail.com
표준이사	이수진	Soo-Jin Lee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jinlee@sangi.ac.kr
감사	김재홍	Jae-Hong Kim	김재홍한의원	gilseol01@naver.com
감사	고창남	Chang-Nam Ko	강동경희대학교 한방병원	kcn202@khu.ac.kr

J Korean Med.

1963. 5. 1. 대한한의학회보 창간
1967. 3. 15. 대한한의학회지로 명칭 변경
2005. KCI 등재

Quarterly issued(March, June, September, and December)

Aims and Scope

The Journal of Korean Medicine is an open access and peer-reviewed journal that publishes four issues a year. The journal seeks to understand the action of traditional medical applications and to encourage the clinical and basic researchers to explore the valuable knowledge behind the ancient Korean Medicine. The journal publishes variety article types including original researches, reviews, and case-reports etc. The subjects covered by the journal includes acupuncture & moxibustion, pharmacology and toxicology of natural resources, clinical researches, constitutional medicine, and medical classics, with a special emphasis of biological mechanisms of action, as well as their efficacy and safety.

■ 무료구독 문의 02-2658-3627

대한한의학회 The Society of Korean Medicine

■ 편집위원장 (Editor in Chief)

문상관 Sang-Kwan Moon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skmoon@khu.ac.kr

■ 편집위원회 (Editorial board)

남상수	Sang-Soo Nam	강동경희대 한방병원	dangun66@yahoo.co.kr
임성우	Seong-Woo Lim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	omdlsw@hanmail.net
박성식	Seong-Sik Park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parkss@dongguk.ac.kr
배현수	Hyun-Su Bae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hbae@khu.ac.kr
송호섭	Ho-Sueb Song	가천대학교 인천한방병원	hssong70@gachon.ac.kr
안세영	Se-Young Ahn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ajhj@unitel.co.kr
전찬용	Chan-Yong Jeon	가천대학교 인천한방병원	joncy@gachon.ac.kr
한창호	Chang-Ho Han	동국대학교 경주한방병원	changho.han@gmail.com
정우상	Woo-Sang Jung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wsjung@jhu.ac.kr

■ 편집위원회 실무 (Manuscript editor)

임현경 Hyeon-Kyeong Im 대한한의학회 skom1953@daum.net

■ 편집위원회 사무실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91 대한한의사협회 307호 대한한의학회
전화 02-2658-3627, 팩스 02-2658-3631

42권 3호 (통권 134호) (Vol.42. No.3)
2021년 9월 1일 인쇄 Printed 1. September. 2021
2021년 9월 1일 발행 Published 1. September. 2021
발행인 최도영 Publisher Do-Young Choi
편집인 문상관 Editor in chief Sang-Kwan Moon
발행처 대한한의학회 Published by The Society of Korean Medicine
편집·인쇄 엠앤디하나(전화 747-7047, 팩스 2273-7776)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91 대한한의사협회 307호
전화 02-2658-3627
팩스 02-2658-3631
Homepage http://jkom.org
E-mail address skom1953@daum.net

3F, 91 Heojun-ro, Gangseo-gu, Seoul, 157-200, Korea
Tel +82-2-2658-3627
Fax +82-2-2658-3631
Homepage https://www.skom.or.kr/
E-mail address skom1953.journal@gmail.com

입금계좌번호 하나은행 101-910008-24904 대한한의학회 (게재료 20만원)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KOFST)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 이 학술지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지원을 받아 발간됩니다.

This paper meets the requirements of KS X ISO 9706, ISO 9706-1994 and ANSI/NISO Z.39.48-1002 (Permanence of Paper)

Copyright 2013 The Society of Korean Medicine all rights reserved